

#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다올 KTB 월지급글로벌멀티에셋인컴 EMP 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
2. 시행예정일: 2022 년 10 월 26 일
3. 변경사항:
  - 디폴트옵션 관련 투자전략 문구 추가
  -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내 파생상품 관련 조항 변경 및 관련 투자전략 추가
 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  - 집합투자업자 투자위험등급 기준 개정사항 반영
4. 상세 변경사항:

항 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<b>요약정보</b>			
투자목적 및 투자 전략 <모투자신탁에 대한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>	디폴트옵션 관련 투자전략 문구 추가          투자전략 추가	(추가)    [상세운용전략] ③리스크 제어 전략 적극적인 변동성 관리를 통한 위험 조정수익률 향상 - 시장 및 포트폴리오 변동성 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리스크 제어 프로세스* 실행 (추가)	※ 이 투자신탁은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함    [상세운용전략] ③리스크 제어 전략 적극적인 변동성 관리를 통한 위험조정 수익률 향상 - 시장 및 포트폴리오 변동성 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리스크 제어 프로세스* 실행 - 시장 상황에 따라 원자재 관련 장내·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자산배분 효과 극대화 및 펀드의 변동성 제어 추구
<b>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<모투자신탁 주요 투자대상>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<채권>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 및 주식관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	<채권>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 및 주식관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

	투자대상자산 내 파생상품 관련 조항 변 경	<p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 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은 제외한다) 및 이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</p> <p>&lt;자산유동화증권&gt;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 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</u> <u>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</u>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</p> <p>&lt;파생상품&gt;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 수, 개별주권, 금리, 통화 관련 장내 장외파생상품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서 외국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 상품 및 외국거래상대방과 체결하는 장외파생상품을 포함</p>	<p>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 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</p> <p>&lt;자산유동화증권&gt;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 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, 한국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 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 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</p> <p>&lt;파생상품&gt;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, 개별주권, 금리, 통화, <u>원자재</u> 관련 장 내장외파생상품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서 외국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 품 및 외국거래상대방과 체결하는 장외 파생상품을 포함</p>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 리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<모투자신탁에 대 한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>	디폴트옵션 관련 투자전 략 문구 추가           투자전략 추 가	(추가)    [상세운용전략] ③리스크 제어 전략 적극적인 변동성 관리를 통한 위험 조정수익률 향상 - 시장 및 포트폴리오 변동성 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리스크 제어 프로세 스* 실행 (추가)	※ 이 투자신탁은 투자위험이 상이한 <u>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</u> <u>상황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</u> <u>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</u> <u>을 조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</u> <u>관리하고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함</u>  [상세운용전략] ③리스크 제어 전략 적극적인 변동성 관리를 통한 위험조정 수익률 향상 - 시장 및 포트폴리오 변동성 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리스크 제어 프로세스* 실행 - 시장 상황에 따라 원자재 관련 장내 <u>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자산배분 효</u> <u>과 극대화 및 펀드의 변동성 제어 추구</u>
10. 집합투자기구	집합투자업자	<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의 투자위험	<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의 투자위험등

의 투자위험	투자위험등급 기준 개정사 항 반영	등급 기준> 주석 6.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, 지방채, <u>회사채(AA- 이상), CP(A1 이상),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을 의미합니다.</u>	급 기준> 주석 6.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, 지방채, <u>회사채(A- 이상), CP(A2- 이상),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을 의미합니다.</u>
12.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투자신탁 재산의 평가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<기준가격 산정방법>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u>대차대조표상</u> 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합니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, 1,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	<기준가격 산정방법>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u>재무상태표상</u> 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합니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, 1,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
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○ 신탁계약기간의 변경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○ 신탁계약기간의 변경( <u>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</u> )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	(2) 임의해지 3)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 원 미만인 경우  4)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	(2) 임의해지 3)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 년( <u>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 )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4)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 년( <u>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 )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	(2) 수시공시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	(2) 수시공시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 <u>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</u> )

			를 포함한다)
--	--	--	---------